제주한라대학교 학칙 신·구조문대조표

현행	개정(안)
제37조(학생지도) ①생략 ②학생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	**제37조(학생지도)** ①현행과 같음 ②학생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복지 및 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44조(징계)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위원회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. 1~4 생략 ②생략	**제44조(징계)**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위원회, 학생복지 및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. 1~4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
제47조(장학금) ①생략 ②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지급규정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발, 지급한다. ③생략 ④신설	**제47조(장학금)** ①현행과 같음 ②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③현행과 같음 ④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51조(본부조직) ①본 대학교에 교무처, 기획처, 산학협력처, 입학홍보처, 학생복지처, 사무처를 둔다. ②~⑦생략	**제51조(본부조직)** ①본 대학교에 교무처, 기획처, 산학협력처, 입학홍보처, 학생복지처, 국제교류처, 사무처를 둔다. ②~⑦현행과 같음
제51조의2(교육조직) ①~④생략 ⑤신설	**제51조의2(교육조직)** ①~④현행과 같음 ⑤각 학부 및 학과의 조직과 사무분장은 총장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51조3(산학협력단) ①~③생략 ④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조직을 두며, 조직과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. ⑤신설	**제51조3(산학협력단)** ①~③현행과 같음 ④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조직을 두며, 그 직제 및 사무분장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⑤기타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.

현행	개정(안)
제51조의5(학교기업의 현장실습) ①생략 ②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	**제51조의5(학교기업의 현장실습)** ①현행과 같음 ②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제51조의6(학교기업 보상금 지급 기준) ①~③생략 ④기타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	**제51조의6(학교기업 보상금 지급 기준)** ①~③현행과 같음 ④기타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제52조(부속기관 및 부속시설) ①본 대학교에 부속기관 및 부속시설로 정보전산원, 도서관, 신문방송사, 한라아트홀, 한라학사, 예비군중대, 보건실, 평생교육원, 국제교류원을 둔다. ②~④생략	**제52조(부속기관 및 부속시설)** ①본 대학교에 부속기관 및 부속시설로 정보전산원, 도서관, 신문방송사, 한라아트홀, 한라학사, 평생교육원, 예비군중대, 보건실을 둔다. ②~④현행과 같음
제59조(다문화학생의 지원) 다문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학생복지 및 지도위원회에서 지원한다. ②신설	**제59조(소수집단학생의 지원)** ①소수집단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소수집단학생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. ②소수집단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	부 칙 1.(시행일) 이 학칙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